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6. 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'96. 7. 1부터 "쓰레기문전수거"를 전면실시하게 됨에 따라, 전담차량 운전원 7명을 보강함.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에 의거 "부산광역시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"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구의 본청, 의회사무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음.

. 구 본 청 : 443명 <증 7명>

※ 쓰레기문전수거 전담차량 운전원보강
⇒ 7명 (지방기능직 10등급 7)

. 의회사무국 : 16명 <변동사항 없음>

. 보 건 소 : 46명 <변동사항 없음>

. 동 : 264명 <변동사항 없음>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구본청 : 443 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의 본청(이하 "구본청"이라 한다), 의회사무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구본청 : <u>436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구본청 : <u>443명</u>